

보내는 사람

받는 사람

국세환급금 통지서

일련번호		관리번호(우체국용)	
------	--	------------	--

환급권리자	상호(법인명)		환급관서 세무서장
	성명(대표자)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(사업장)		

환급내용	환급사유		지급요구일	
	세목		지급요구번호	
	환급금		환급금 받는 방법	
	환급가산금			
	환급금계			
총당금액				

※ 귀하(귀사)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총당(납부)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, 총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총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전화 : 환급금 결정내용, 환급계좌 신고 관련(☎ 부과담당자 번호)
환급금 수령방법, 지급일 관련(☎ 환급담당자 번호)

안내 말씀

- 국세환급금은 귀하(귀사)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.
-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(PC, 모바일)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[홈택스 접속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국세환급 → 환급계좌개설(변경)신고]
-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,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

◎ 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6조

